

의정부지방법원 2019. 9. 11 선고 2019가합67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종친회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9. 11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은 남양주시 G 답 2,775㎡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19. 7. 4.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,

나. 피고 C은 남양주시 G 답 2,775㎡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19. 5. 30.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,

다. 피고 F, D은 남양주시 H 답 1,499㎡, 남양주시 I 답 95㎡, 남양주시 J 답 3,546㎡ 중 각 1/3 지분에 관하여 2019. 5. 31.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,

라. 피고 E는 남양주시 H 답 1,499㎡, 남양주시 I 답 95㎡, 남양주시 J 답 3,546㎡ 중 각 1/3 지분에 관하여 2019. 5. 30.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,

마. 피고 D은 남양주시 K 도로 27㎡에 관하여 2019. 5. 31.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

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재판장판사김경희

판사이인경

판사이인걸

별지